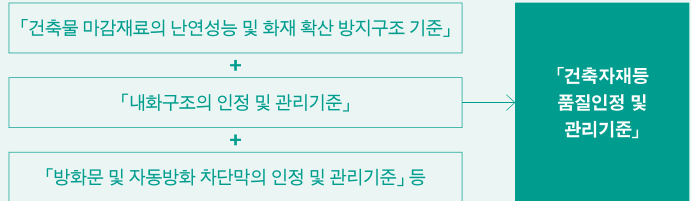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화재안전 성능 높이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1.9.17.

국토교통부는 내화구조·마감재료·방화문과 자동방화 차단막 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품질인정제도)」을 확대 하고자 지난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12월 23일에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 공학 전문가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단체 등으로자 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왔다. 특히 2020년 이전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 및 ‘건축법’ 개정을 통해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하였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절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서 유통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내화구조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존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 차단막, 내화체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자체별로 규정된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국토교통부 고시는 폐지한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고 품질인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정 신청을 하여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